

#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학과 학사운영지침

제정 2009.03.01.	개정 2017.11.01.
개정 2011.04.07.	개정 2019.01.31.
개정 2013.03.21.	개정 2021.12.30.
개정 2015.08.06.	<b>개정 2025.12.12.</b>

**제1조(목적)**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학과의 원활한 학사관리를 위해 부산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입학시험 및 모집인원)** 한의과학과 입학시험과 신입생의 모집인원은 부산대학교 학칙이 정한 바에 따르며, 그 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3조(전공)** ① 한의과학과에는 석사 및 박사과정, 석·박사 통합과정을 두며, 한의과학전공의 단일전공으로 한다.

② 박사과정 운영에 필요할 경우 세부 전공을 둘 수 있다.

③ 전공의 신설이나 폐지는 한의학 학술학위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이 정한다.

**제4조(한의학 학술학위과정 운영위원회)** ① 한의학 학술학위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의학 학술학위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, 일반대학원 한의학과장 및 융합한의과학과장,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신입생 모집과 관련된 제반 활동
2. 전공의 신설 및 폐지 심의
3. **모집인원 배정 심의**
4. 학기별 개설 교과목 결정
5. 교육과정 관련 제반 활동
6. 학위논문 관련 제반 활동
7. 한의과학과 학사운영지침의 개정 심의
8. 복합학위과정 및 기타 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5조(지도교수)** ① 학생은 입학 후, 석사과정은 둘째 학기, 박사과정은 첫째 학기 중에 지도교수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지도교수는 각 학년별로 3명 이하의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.

③ 정년퇴임까지의 재직잔여 기간이 2년 이하인 교수에게는 학생을 배정하지 아니한다.

④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**부득이한 경우,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 내 교수로 변경할 수 있다.**

⑤ <삭제>

제6조(연구실순환) <삭제>

제7조(연구계획서 등) <삭제>

제8조(학위논문 제출자격)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에 최종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① 석사과정은 24학점,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이수(예정)자

② 학위청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
③ <삭제>

④ 박사과정 학생은 영향력지수(IF) 합이 3.0 이상의 국제학술지[SCI, SCIE, SSCI, A&HCI]에 논문 게재가 확정되었거나 출판된 논문을 가진 자. 단, 해당 논문은 박사과정 입학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후 발표된 학위청구 학생과 지도교수가 주저자인 논문만을 인정한다.

⑤ <삭제>

제9조(학위논문 심사위원회) ① 지도교수는 **학위청구논문작성계획서** 제출 시,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의 경우 3명, 박사과정의 경우 5명으로 한다.

③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.

④ **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사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, 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**

제10조(기타 운영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, 학사 운영규정,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규정 등을 적용한다.

부칙(2025. 12. 12.)

이 개정 지침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